

2014년 4월 8일

앤드류 룩
통상투자부 장관
국회의사당
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캔버라 2600

앤드류 룩 장관 귀하,

금일자 한국-호주 자유무역협정(“협정”)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11장(투자)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양 당사국은 제11장(투자)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(유엔문서 A/CN.9/783)(“UNCITRAL 투명성 규칙”)의 향후 적용에 대해 이 협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.

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(투자)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윤 상 직

2014년 4월 8일

윤상직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대한민국 서울

윤상직 장관 귀하,

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“금일자 한국-호주 자유무역협정(“협정”)의 서명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제11장(투자)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호주 대표단 간에 도달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양 당사국은 제11장(투자)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 유엔국 제상거래법위원회(UNCITRAL)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(유엔문서 A/CN.9/783)(“UNCITRAL 투명성 규칙”)의 향후 적용에 대해 이 협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협의를 개시한다.

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UNCITRAL 투명성 규칙은 제11장(투자)의 제2절에 따라 개시된 중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본인은 이 서한과 귀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귀하의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”

본인은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이 양해를 공유한다는 것과 귀하의 서한과 이 회답 서한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.

앤드류 룩